

S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요지

1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공직자 외부강의제도 개선방안 권고」사항을 이행,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우리 공사의 청렴도 향상 및 국민권익위원회 ‘부패방지 시책평가’ 등 외부평가 성과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개정내용

- 외부강의 대가기준(상한액)에 원고료 포함
 -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‘외부강의 대가기준’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
 - ‘외부강의 대가기준’을 ‘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(상한액)’으로 명확화
- 외부강의.회의 등의 횟수.시간 제한
 -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.회의 등(강의.강연.발표.토론.자문 등)에 대해 월 3회 · 6시간으로 제한
-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금액 반환 의무화
 - ‘외부강의 대가기준’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
- 외부강의.회의 등의 관리체계 강화
 - 임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.홍보 강화(반기별)
 - 임직원 외부강의 실태 분석 및 관리강화(반기별 사장 보고)

3. 참고사항

- 가. 제안근거
 -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
 -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-2142호『공직자 외부강의제도 개선방안 권고』(2015.9.30)
 - 감사방침 제24호 『SH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』(2016.3.9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절 차 : 해당 없음
- 마. 기타참고사항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23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① (생략) ②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 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 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 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직무관련 강의·강연의 대가는 별표1에 따른 <u>기준</u> 에 초 과할 수 없다. ③ (생략)	제23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준</u> 을 초 과할 수 없다.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임직원이 외부강의·회의 등을 월 3회 또는</u> <u>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</u> <u>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</u> <u>야 한다.</u> ⑤ <u>행동강령 책임관은 반기별로 임직원의 외</u> <u>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</u> <u>한다.</u>
<u><신 설></u>	
<u><신 설></u>	
제28조(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) ① 제17조 또는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 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,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 즉시 반환 또는 신고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 고하여야 한다.	제28조(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) ① ----- ----- <u>받거나 제23조제2항의</u> <u>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</u> ----- ----- -----
제30조(교육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 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	제30조(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단, 제23조 관련 사항은 반기별로 교육 및 홍</u> <u>보하여야 한다.</u>
제 31 조 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 ① 행동강령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(<u>행정</u> <u>감사팀장</u>)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.	제 31 조 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 ① 행동강령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(<u>행정</u> <u>감사부장</u>)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.
	부 칙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현 행>

<별표 1(제23조 관련)>

외부강의 대가기준

(단위: 천원 / 1시간)

구 분	1급 이상	2급 이하	비 고
상 한 액	230	120	<u>원고료·여비는</u> <u>미포함</u>
1시간 초과	120	100	

<개 정>

<별표 1(제23조 관련)>

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(상한액)

(단위: 천원 / 1시간)

구 분	1급 이상	2급 이하	비 고
상 한 액	230	120	<u>원고료 포함</u>
1시간 초과	120	100	

* 강의시간 산출기준 :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,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
(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)

* 위의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라, 이를 초과한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.

* 여비는「SH공사 여비규정」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

SH공사 임직원행동강령 개정

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(상한액)

(단위: 천원 / 1시간)

구 분	1급 이상	2급 이하	비 고
상 한 액	230	120	원고료 포함
1시간 초과	120	100	

- * 강의시간 산출기준 :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,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 (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)
- * 위의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라, 이를 초과한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.
- * 여비는「SH공사 여비규정」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

SH공사 임직원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3조제2항의 “기준에” 를 “기준을” 로 한다.
- 제23조제4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④ 임직원이 외부강의·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⑤ 행동강령 책임관은 반기별로 임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8조제1항의 “받은” 을 “받거나 제23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” 으로 한다.
- 제30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단, 제23조 관련 사항은 반기별로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.
- 제31조의 “행정감사팀장” 을 “행정감사부장” 으로 한다.
- 별표1(제23조관련)을 첨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